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91
----------	-----

발의연월일 : 2026. 3. 5.

발 의 자 : 원주영, 김현택, 한근수,
정현미, 이정애, 김동훈,
박은경, 김상수, 박윤옥,
이진환, 전해연, 이수련

1. 제안 이유

옥외영업 시 음식물 등을 단순가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관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옥외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옥외영업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정비하여 단순가열(굽거나 끓이는 행위)을 허용하도록 함(안 별표 2 제1호)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5. 관계법령 :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별표 2]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수칙

1. 옥외영업장에서는 옥내에서 조리된 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음식물의 단순가열(굽거나 끓이는 행위)만 가능하며, 조리·세척 등 주방시설 설치가 불가하고, 옥외영업장에서 음식물을 조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장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환경분쟁조정법」 제16조에 따라 사업활동, 그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한 소음·진동, 악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에 의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업자를 상대로 환경분쟁조정신청 될 수 있다.
4. 영업장에서 음주소란 또는 소란 등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5. 식품 등을 취급하는 모든공간(옥외영업장 포함)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6. 옥외에 설치된 접객시설은 영업시간 종료 이후 모두 건물 내부로 이동하거나 공공이 이용하는 보도·도로·공개공지 등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하여야 하며 옥외에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7.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 폐기물은 건물 안에 있는 폐기물 용기에 처리하고, 옥외영업장에 쓰레기통을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8.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은 경우 영업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등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9. 옥외영업장으로 신고된 곳은, 적법하게 신고된 곳임을 알리는 안내문구나 표지판 부착을 권장하며, 필요 시 옥외영업장에 줄·선 등으로 구획하여 표시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2 제1호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자들의 옥외영업 활성화를 위한 조리음식의 단순가열 추가 사항으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가 없음

4. 작성자

- 재정경제국 위생과장 김수현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7. 생략.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12. 생략.

13.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